

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안내

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

대상기업	●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피해기업, 직·간접 피해기업
지원한도	● (기업당) 3억원 / (매출액한도) 심사기준 매출액의 1/2 적용
심사방법	● 일반심사 (심사기준 보증금액 3억원 이하는 간이심사)
우대조치	● (보증비율) 95% 적용 / (보증료율) 0.3%p 차감, 최대 1.0% 적용
총량한도	● (대구·경북) 3,000억원 / (기타지역) 8,000억원

② 신성장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

대상기업	● 6대 新수출성장동력 및 신성장 품목 수출중소기업
지원한도	● (수출도약) 추정매출액의 1/2 / (수출초보) 추정매출액의 1/3
심사방법	●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 특례보증 5억 이하 일반심사(영업점장 전결)
우대조치	● (보증비율) 95% 적용 / (보증료율) 0.3%p 차감
총량한도	● 4,000억원

③ 기업은행 소상공인 최저금리(1.5% 수준) 협약보증

대상기업	● (개인기업) 연매출 5억원 초과기업 또는 5억원 이하 성장유망기업 ● (법인기업)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성장유망기업
지원한도	●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같은 기업당 1억원
심사방법	●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간이심사 적용(고객팀장 전결)
우대조치	● (보증비율) 100% 적용 / (보증료율) 최초 1년 0.7%p, 이후 2년 0.4%p 차감
총량한도	● 19,300억원

④ 영세 중소기업 . 소상공인 신속.전액 보증

대상기업	●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 .소상공인
지원한도	●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같은 기업당 50백만원
심사방법	●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간이심사 적용(고객팀장 전결)
우대조치	● (보증비율) 100% 적용 / (보증료율) 0.5%p 차감
총량한도	● 6,000억원

⑤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('20.08월 시행)

대상기업	● 정부, 지자체 등에서 재난(재해)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● 정부, 지자체 등의 재난(재해)복구자금을 배정 받은 중소기업
지원한도	● (일반재난) 운전+시설 3억원 / (특별재난) 운전 5억원, 시설 소요자금
심사방법	●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일반심사 적용(영업점장 전결)
우대조치	● (보증비율) 90% 적용 / (보증료율) 일반재난 0.5%, 특별재난 0.1% 고정요율
총량한도	● 별도 통지 전까지 운용

영주지점 담당자 : 부지점장 박병준(☎054-639-1511), 차장 강창구(☎054-639-1512)